

무배당 Chubb 치아충전치료보장보험19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기타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Chubb 치아충전치료보장보험1904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약(킴퍼깃레진(치아당 보상)) · 골드인레이/골드온레이 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특별약관 ·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특별약관 ·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I ·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II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특별약관 	10년만기	1~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9년만기	71세		
	8년만기	72세		
	7년만기	73세		
	6년만기	74세		
	5년만기	7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II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및 턱관절장애 치료보장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보이스피싱 손해비용보장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10년만기		
9년만기		71세		
8년만기		72세		
7년만기		73세		
6년만기		74세		
5년만기		75세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적용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담보별 가입제한에 관한 사항
 -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I 의 보험가입금액은 30만원을 한도로 함
 - New크라운치료보장 특별약관 II 의 보험가입금액은 30만원을 한도로 함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 및 턱관절장애 치료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을 한도로 함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을 한도로 함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운영함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17.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다.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라.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마.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기타

- 회사는 통신판매(TM, 홈쇼핑 등)시 효율적인 상품설명을 위하여 판매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 플랜의 선택은 계약자의 결정에 의하며, 플랜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Chubb. Insured.SM